



“경상북도교육청” 과 “(재)경북테크노파크” 간
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



경상북도교육청과 (재)경북테크노파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교류·협력 증진에 관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상북도교육청과 (재)경북테크노파크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간 도내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활성화 및 체험 활동 등의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호혜 및 협력의 원칙에 따라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(협력범위)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협력 지원한다.

1. 양 기관 간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교류
2. 양 기관 간 인적,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공동협력
3. 양 기관 간 콘텐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력
4. 양 기관 간 홍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

제4조(협력창구) 이 협약을 위한 협력창구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와 (재)경북테크노파크 경북글로벌게임센터로 한다.

제5조(협력원칙)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의를 갖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, 기본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관계 규정에 따르되,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운영은 실무협의 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협의·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협의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·조정토록 한다.

제8조(협약의 효력 및 변경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,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. 본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해석 등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.

제10조(비밀준수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거나,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의 해결 및 내용을 위해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 씩 보관한다.

2018년 9월 7일



교육감 임종식

임종식



원장 이재훈

이재훈